해외농업・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9066

발의연월일: 2022. 12. 21.

발 의 자: 안호영·고영인·권인숙

김승남 · 김정호 · 김홍결

서삼석 · 소병훈 · 신정훈

양경숙ㆍ어기구ㆍ위성곤

윤미향 • 윤영찬 • 윤재갑

윤준병 • 이원택 • 이해식

의원(18인)

제안이유

개발도상국 등에서 해외농업이나 국제산림개발을 하는 경우 한국산 농업기계 등 우수한 장비를 보급하게 되면, 농업기계 분야의 해외진출 이 촉진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내실화되며 국내산 농업기계 산업 의 활성화가 가능해짐.

이에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연관산업(농기계, 농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)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해외농업·산림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·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, 농림·산림분야 ODA의체계적·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국제농업협력기본계획 및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.

주요내용

- 가. 해외농업·산림자원의 국내 반입 및 연관산업 지원(안 제23조) 해외농업·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농업·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및 해외농업·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.
- 나. 국제농업·산림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30조 및 30조의2 신설)

국제농림협력사업 및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고, 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함.

- 다. 관계기관의 협조(안 제33조의2)
 - 1)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요청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 치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·성격에 따라 '관련 공 공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'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.
 - 2) 협조 대상 사무에 국제농업·산림협력사업을 추가함.

법률 제 호

해외농업 ·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외농업 ·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제1호 중 "조사에 소요되는 비용"을 "조사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양성에 소요되는 비용"을 "양성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"을 "기술교류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의2. 해외농업·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, 농업자재, 농업시설 및 농약·비료·사료·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·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해외농업·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각각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제31조 및 제31조의2로 하고, 제5장에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30조(국제농업협력기본계획의 수립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 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농업협력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중앙

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② 국제농업협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국제농업협력의 목표와 전략 및 기본방향
- 2. 국제농업협력의 대내외 환경분석
- 3. 국제농업협력 정책의 수립·조정·평가 및 제도개선
- 4. 민간과의 국제농업협력 방안
- 5. 국제농업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
- 6.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0조의2(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의 수립) ① 산림청장은 국제산림협력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 을 5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②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국제산림협력의 목표와 전략 및 기본방향
 - 2. 국제산림협력의 대내외 환경분석
 - 3. 국제산림협력 정책의 수립·조정·평가 및 제도개선
 - 4. 민간과의 국제산림협력 방안

- 5. 국제산림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
- 6.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"를 "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장, 관련 공공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"로 하고,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"을 "요청받은 자는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5. 제31조 또는 제31조의2에 따른 국제농업·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보조 등) ① 정부는 해외	제23조(보조 등) ①
농업·산림자원개발을 촉진하	
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	
1. 해외농업 · 산림자원개발을	1
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	<u>조사</u>
2. 해외농업 · 산림자원개발을	2
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	
양성에 소요되는 비용	<u>양성</u>
3. 해외농업·산림자원개발에	3
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	
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	<u>기술교류</u>
<u><신 설></u>	3의2. 해외농업·산림자원개발
	과 관련된 농업기계, 농업자
	재, 농업시설 및 농약·비료·사
	료·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
	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 산
	업의 해외진출 지원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
	1

<신 설>

산림청장은 해외농업·산림자 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해외농 업·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필 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제30조(국제농업협력기본계획의 수립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 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농업협력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② 국제농업협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 - 1. 국제농업협력의 목표와 전략및 기본방향
 - 2. 국제농업협력의 대내외 환경분석
 - 3. 국제농업협력 정책의 수립· 조정·평가 및 제도개선
 - 4. 민간과의 국제농업협력 방안
 - 5.
 국제농업협력 강화를 위한

 전문인력 양성 방안

<신 설>

- 6.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사항
-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- 제30조의2(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의 수립) ① 산림청장은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②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 - 국제산림협력의 목표와 전략
 및 기본방향
 - 2. 국제산림협력의 대내외 환경

 분석
 - 3. 국제산림협력 정책의 수립· 조정·평가 및 제도개선
 - 4. 민간과의 국제산림협력 방안
 - 5. 국제산림협력 강화를 위한

및 지원) (생 략) 및 지원) (생략)

제33조의2(관계 기관의 협조)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 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 우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하다.

1. ~ 4. (생 략)

전문인력	양성	밧아
	0 0	0 1.

- 6.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의 효 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
제30조(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제31조(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) (현행 제30조와 같음) 제31조(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제31조의2(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) (현행 제31조와 같음)

> 제33조의2(관계 기관의 협조) ------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공공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 에게----. 받은 자는 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	5. 제30조의3 또는 제30조의4에
	따른 국제농업·산림협력사업
	의 촉진 및 지원